

**MATERIAL SAFETY DATA SHEET**

---

발행일 2010년 5월 31일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 세부사항  
제품명 : GC Dentin Conditioner  
제품 용도: 치과기공 보조품  
제조사/본사: GC Corporation  
주소: 76-1, Hasunuma-Cho, Itabashi-Ku, Tokyo 174-8585  
담당부문: 품질 보증부  
전화번호:81-3-3965-1388  
FAX 번호:81-3-3965-1276

**2. 유해 · 위험성**

사람과 환경에 관계된 특정 위험정보:  
국제규정의 계산절차에 기인했을 때,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분류체계:

이 분류는 국제적 물질목록의 최신판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업, 문헌정보를 인용하여 부연설명했다.

· **NFPA ratings (scale 0 - 4)**



· **HMIS-ratings (scale 0 - 4)**



GHS 표시 성분



3.2/2-피부 민감증 유발

3.3/2A-심각한 안구민감증 유발

예방:

보호장갑/ 안전복/ 안구보호장비/ 안면보호장비를 착용

대응:

눈에 들어간 경우: 몇 분간 조심스럽게 물로 눈을 행군다. 가능한경우 콘택트렌즈를 빼고 계속 행군다.

특별처치(라벨 참조)

피부 민감증이 발생한 경우: 의학적 조치를 취한다

안구 민감증이 발생한 경우: 의학적 조치를 취한다

오염된 의복은 벗고 재착용전에 세탁한다.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적 특성

기술사항:

물질들의 혼합물이 무위험성의 부가물과 함께 아래 제시되어 있다

GC Dentin Conditioner

혼합물: 다음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 성분			
9003-01-4	Polyacrylic acid	Warning:  3.2/2, 3.3/2A, 3.8/3	25.0%

부가사항: 나열된 위험문구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16 번을 참조

**4. 응급조치 요령**

일반정보: 특별한 방법이 요구되지 않음

흡입했을 경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불편할 경우 의사와 상담할 것

피부에 접촉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본 제품은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음

눈에 들어갔을 경우: 눈을 뜬 상태로 몇분간 흐르는 물에 씻을 것

삼켰을 경우: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사와 상담할 것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적합한 진화약품:

CO2, 진화용 분말 또는 물 분사기. 물을 분사하거나 알코올 방지 거품으로 큰 불을 진압할 것

보호장비: 특별한 방법이 필요없음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에 대한 주의사항: 해당없음

환경에 대한 주의사항: 하수구, 지표수, 지하수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청소 및 제거방법: 물과 결합하는 물질로 흡수한다 (모래, 규조토, 산성붕대, 일반붕대, 톱밥)

부가정보: 어떤 위험한 물질도 방출되지 않는다

**7. 취급 및 저장방법**

취급:

안전취급요령: 특별한 조치가 필요없음

폭발과 화재에 대한 보호요령: 특별한 조치가 필요없음

저장:

창고와 저장소의 적절한 보관방법: 특별한 조치가 필요없음

일반저장시설내에 대한 정보: 해당없음

보관조건에 대한 추가정보: 없음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기술시스템 설계에 대한 부가정보: 추가정보 없음. 항목 7 참고.

작업장에서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는 허용한계 요소:

본 제품은 작업장에서 모니터링 되어야 할 정도의 치명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정보: 목록내용은 제작 당시 유효하였다.

개인보호장비:

일반보호 및 위생조치:

화학물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예방조치를 따라야 한다.

호흡장비: 요구되지 않음.

손보호:

장갑은 방수용이어야 하며, 제품, 물질, 제조품에 대해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시험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 제조물 그리고 혼합물에 대한 장갑재질의 권장은 없다. 장갑 재질의 선택은 침투시간, 분해, 파손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장갑재료:

적절한 장갑의 선택은 특별한 재질, 품질, 제조업체를 상관하지 않는다. 장갑은 여러물질로 제조된 제품이기 때문에, 장갑의 내성은 미리 계산 되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적용 전 미리 검사할 것을 권장한다

장갑의 침투시간

제조사로부터 장갑의 정확한 파손시간을 확인하고, 명시해야 한다.

눈 보호: 리필하는 동안에 고글착용을 권한다

**9. 물리화학적 특성**

일반정보
종류: Fluid 색상: 제품설명서에 따른다. 향료: 특유의 향
조건 변화 녹는점/녹는점 범위: 미확인 끓는점/끓는점 범위: 180°C (356°F)
발화점: 해당없음
자연발화: 제품은 자연 발화되지 않음
폭발위험: 제품은 폭발위험이 없음
20°C (68°F)에서 증기압: 23 hPa (17 mm Hg)
밀도: 미확인
물과의 용해성 및 혼화성: 혼화성이 없음 또는 혼합하게 어려움
용매 함량: 유기용매: 0.0% 수분: 90.0%
고체 함량: 100.0%

**10. 안정성 및 반응성**

열분해/ 피해야 할 조건: 설정조건에 따라 사용 시 해당사항없음.

피해야할 물질:

위험반응: 위험반응 알려지지 않음

제품변질위험성: 제품변질위험성이 나타나지 않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급성 독성:

일차 자극:

피부: 피부와 점막에 자극성

자극성 나타나지 않음

눈: 자극성 나타나지 않음

민감성: 특별 민감성 나타나지 않음

독성에 관한 부가정보:

제조품에 대한 입증된 계산법에 따른 경우, 본 제품은 분류 대상이 아니다.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추가 환경 정보:

일반적 사항:

수질위험 Class 1 (Self-assessment): 수질에 대한 경미한 위험

회색하지 않은 제품 또는 많은 양을 지하수, 물줄기 또는 하수구에 버리지 말 것

**13. 폐기시 주의사항**

제품:

권장사항: 적은 양일 경우 생활쓰레기와 함께 처리될 수 있음

깨끗하지 않은 포장:

권장사항: 공식적인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DOT regulations:

Hazard class: -

Land transport ADR/RID (cross-border):

ADR/RID class: -

GC Dentin Conditioner

Maritime transport IMDG:

IMDG Class: -

Marine pollutant: No

Air transport ICAO-TI and IATA-DGR:

ICAO/IATA Class: -

UN "Model Regulation": -

15. 법적 규제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 41 조에 따라 MSDS 배포, 제품취급, 기타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한규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숙지하고 해당내용에 따라 취급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의한규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숙지하고 해당내용에 따라 취급한다.

폐기물관리법에의한규제내용기재:

폐기물관리법 해당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Sara

Section 355 (치명적인 위험성 물질):

어떤 성분도 목록에 없음

Section 313 (구체적 독성 화학물질):

어떤 성분도 목록에 없음

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독성물질관리규범):

모든 성분은 목록에 있음

65 조항

암을 유발하는 화학제품

어떤 성분도 목록에 없음

여성의 생식에 영향을 끼치는 화학제품

어떤 성분도 목록에 없음

남성의 생식에 영향을 끼치는 화학제품

어떤 성분도 목록에 없음

발육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화학제품

어떤 성분도 목록에 없음

발암물질 분류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어떤 성분도 목록에 없음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9003-01-4 Polyacrylic acid

3

3844-45-9 Food Blue No. 1

3

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

어떤 성분도 목록에 없음

TLV (Threshold Limit Value established by ACGIH)

어떤 성분도 목록에 없음

MAK (German Maximum Workplace Concentration)

어떤 성분도 목록에 없음

NIOSH-Ca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어떤 성분도 목록에 없음

OSHA-C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어떤 성분도 목록에 없음

제품관련 위험정보:

화학제품을 취급할 때, 일반적인 안전 규정을 준수할 것

이 제품은 유해 물질에 대한 지침에 따라 분류할 대상이 아님

수질 위험 분류: 수질위험분류 1 (Self-assessment): 수질에 대해 경미한 위험성 함유

**16. 기타 참고사항**

제조원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됨.

법적으로 유효한 법적관계를 설립하지 않는다.